

교육과정위원회규정

(규정명 변경: 2023.02.25.)

1996.09.02.제정	2001.03.01.일부개정	2006.03.01.일부개정	2010.01.01.일부개정
2011.04.18.일부개정	2011.12.15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	2012.11.01.일부개정
2013.07.22.일부개정	2017.06.27.일부개정	2018.01.15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
2018.09.28.일부개정	2020.02.26.일부개정	2021.04.01.일부개정	2021.06.01.일부개정
2023.02.25.일부개정			

<학사관리팀>

제 1 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32조에 의거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,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3.1., **2023.02.25.**)

제 2 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23.02.25.)

1. (삭제 2001.3.1.)
2.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사항
3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사항
- 4.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**
- 5.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**

제 3 조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11.12.15., 2012.11.1., 2018.7.1., 2021.6.1.)

② ②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처장, Do-ing교육혁신센터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학사관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**10인 이내**의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위원은 교육과정 분야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한다. (개정 2011.12.15, 2012.8.1., 2012.11.1., 2013.7.22., 2017.06.27., 2018.01.15., 2018.9.28., 2020.2.26., 2021.4.1., 2021.6.1., **2023.02.25.**)

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(개정 2006.3.1.)

④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01.3.1.)

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01.3.1.)

제 4 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하고 회무를 처리한다.

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를 기록 보존하며, 필요한 자료를 정리 제공한다.

제 5 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 (개정 2020.2.26.)

②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한다. (개정 2020.2.26.)

③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거나,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(개정 2020.2.26.)

제 6 조(심의의결)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7 조(참고인출석) 위원회는 교육과정 편성, 운영,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.(개정 2023.02.25.)

제 8 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여야 하며,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 최종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06.3.1.)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